

2006. 7. 21(금)
제252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교육사회위원회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2006. 7. 18(화)

제252회 임시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7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7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충청북도임시회

○ 2006. 7. 18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국장 박의상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운영하는 보령시설이 2003년 7월 1일 개원되어 운영하고 있으나, 타 시·도 수련원 및 충청북도교직원 복지회관에 비해 콘도사용료가 낮아 운영의 현실성 및 지역의

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,
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타시·도 교직원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및 주 5일 근무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웰빙시대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,
-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2005년 12월 8일 개원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.

나 . 주요내용

- 공공기관의 범위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추가함.
(안 제2조)
- 우리도 수련시설을 타시·도교육감과 협약 체결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함.
(안 제30조제2항, 제37조제2항)
-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사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징수근거를 마련함.(안 제36조의2)
-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

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함.(안 제36조의3)
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의 콘도사용료를 인상함.
(안 별표3)

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: 김재준)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5년 12월 8일에 개원하여 운영중인 충청북도학생 외국어교육원의 사용료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음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타시·도 교직원 수련시설과 연계 활용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의 숙박비를 운영의 현실성 및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성 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시도교육청간 교직원 수련기관 공동이용에 따른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협정 체결 실적과 공동이용에 따른 도내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

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출연월일 : 2006. 7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운영하는 보령시설이 2003년 7월 1일 개원되어 운영하고 있으나, 타 시·도 수련원 및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에 비해 콘도사용료가 낮아 운영의 현실성 및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,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타시도 교직원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및 주 5일 근무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웰빙시대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,
-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2005년 12월 8일 개원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의 범위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추가함.(안 제2조)
- 나. 우리도 수련시설을 타시·도교육감과 협약 체결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함.(안 제30조제2항, 제37조제2항)
- 다.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사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징수근거를 마련함.(안 제36조의2)
- 라.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함.(안 제36조의3)
- 마.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의 콘도사용료를 인상함.(안 별표3)

□ 개정조례안 : 불 입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입
-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입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(이하 “복지회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(이하 “외국어교육원”이라 한다),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(이하 “복지회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원장은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한 타시·도 교육감과 협약 체결한 교직원 및 학생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되, 사용료는 제33조를 적용한다.

제6장의2(제36조의2 및 제36조의3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의2 외국어교육원

제36조의2(경비징수) 외국어교육원 사용자에게 대하여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36조의3(재정) 외국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에 이를 계상한다.

제3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장은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한 타시·도 교육감과 협약 체결한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되, 사용료는 제39조를 적용한다.

별표3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 : 원)

기관명	사용구분	징 수 액			비 고
		학 생	교직원 및 교직원가족	공공단체 및 기타	
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	진천시설	무 료	무 료	3,000	○ 1인 1박 기준
	보령시설	1,000	20,000 (30,000)	30,000 (40,000)	○ 학생은 1인 1박 ○ 공무원 및 가족,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1박 기준. ()는 해수욕장 개장기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제6장의2 외국어교육원

제36조의2(경비징수) 외국어교육원 사용자에게 대하여 숙식비 및 교재대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36조의3(재정) 외국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.

제7장 복지회관

제7장 복지회관

제37조(사용대상) 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(퇴직 교직원을 포함한다)과 그 가족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단체(기관)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회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37조(사용대상)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관장은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한 타 시·도 교육감과 협약체결한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되, 사용료는 제 39조를 적용한다.

【별표 3】

(단위:원)

기관명	사용구분		징 수 액			비고
			학생	교직원 및 교직원가족	공공단체 및 기타	
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	숙박비	진천시설	무료	무료	3,000	(생략)
		보령시설	1,000	10,000 (20,000)	20,000 (30,000)	(생략)

【별표 3】

(단위:원)

기관명	사용구분		징 수 액			비고
			학생	교직원 및 교직원가족	공공단체 및 기타	
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	숙박비	진천시설	무료	무료	3,000	(현행과 같음)
		보령시설	1,000	20,000 (30,000)	30,000 (40,000)	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(개정 2006.5.24 법률 제7957호)

第130條 (使用料의 徵收條例등) ①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,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.

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.